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8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. 3. 6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의결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, 해임·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당연직 위원 중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삭제한다(안 제17조 제4항).
- 위원의 제척 및 회피, 해임·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신설한다.
- 안 제20조제1항제1호를 현행과 같이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4항 중 “본부장,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”를 “본부장으로”로 한다.

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위원의 해임·위촉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4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안 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위원장”을 현행과 같이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④ <u>당연직 위원은 혁신·도시·주택·경제·복지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,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,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이사,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,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,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④ <u>당연직 위원은 주택·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,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,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본부 <u>장으로-----.</u></p>
	<p><신 설></p>	<p>제17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</p> <p>① <u>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② <u>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	<p><u>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
	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7조의3(위원의 해임·위촉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</u> <u>2.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<u>3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</u> <u>4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u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	<u>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<p>제20조(회의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<u>시장</u>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회의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위원장</u>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0조(회의 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1.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2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자문 또는 심의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을 심의한다”를 “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2항 중 “행정2부시장이 되고”를 “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·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,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.

제1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

제17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

제17조제6항 중 “주택정책과장”을 “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위원의 해임·위촉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4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제2항 본문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 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<u>심의 하기</u> 위하여 "서울특별시 사회주 택 위원회"(이하 위원회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<u>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행정2부시장이 되고,</u>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<u>당연직 위원은 혁신·도시·주 택·경제·복지 분야 등 관련 부 서 국장,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,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</u></p>	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<u>자문 또는 심의하 기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사항을 자 문 또는 심의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 의 제·개정</u>에 관한 사항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고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당연직 위원은 주택·사회적경 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,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 으로 한다.</u></p>

이사,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,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,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1. (생략)

2.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·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

<신설>

3. ~ 4. (생략)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.

<신설>

⑤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

3.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

4. ~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⑥ -----
----- 담당 사무관-----
--.

제17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

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<신 설>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위원의 해임·위촉해

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
2. 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
4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단,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8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2년-----

-----.